

## 19:28-1 – 재검표 신청

### 19:28-1 – 재검표 신청

19:28-1 어떠한 선거이든 개표 시 오류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해당 선거 후 15 일 이내에 해당 지역 또는 지역들이 포함된 카운티에 배정된 고등법원 판사에게 하나 또는 여러 지역의 투표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어떠한 선거이든 10 명의 유권자들에게 선거에서 다뤄진 주민투표안에 대한 개표 오류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, 이 유권자들은 해당 선거 후 15 일 이내에 해당 지역 또는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에 배정된 고등법원 판사에게 하나 또는 여러 지역의 해당 주민투표안에 대한 투표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수정 1953, c. 19, s.27; 1991, c.91, s.247; 2005, c.150.

## 19:28-2 – 재검표 관련 비용; 책임; 신청인들의 예치금

### 19:28-2 – 재검표 관련 비용; 책임; 신청인들의 예치금

재검표 신청인 또는 경우에 따라 신청 그룹은 신청 시 처음 개표 결과가 합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를 위해 재검표 비용 및 경비에 대한 지불금의 담보로 판사가 지시하는 대로 재검표를 신청한 지역 하나당 \$25 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검표할 투표수에 비례하는 총금액을 카운티 클럭이나 판사가 지시하는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들에게 예치해야 합니다. 판사는 재검표에 대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비용 및 경비 액수를 책정하여 결정해야 합니다. 재검표 결과 선거 결과가 달라지거나 한 지역 내에서 같은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들 간의 득표수 차이 또는 주민투표안 찬반 표차가 10 표 이상 또는 그 지역 총 투표수의 10% 이상 중 더 높은 수만큼 달라질 경우, 이 지역의 재검표 비용 및 경비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 다른 선거 비용이 지불될 때 해당 선거를 실시한 주, 카운티, 또는 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. 이러한 차이가 생길 만큼의 오류가

발생하지 않았을 경우, 재검표 관련 비용 및 경비는 재검표 신청인 또는 신청 그룹이 담보로 제공한 예치금에서 지불됩니다.

수정 L. 1953, c. 19, p. 340, s. 28.

### **19:28-3 – 재검표; 순서 및 절차**

19:28-3. 재검표; 순서 및 절차

판사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 하에 본인의 지시에 따라 카운티 위원회에 의해 투표 재검표가 공식적으로 실시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판사의 지시에 따라 재검표 신청인 또는 신청 그룹이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자들에게 재검표 시간 및 장소에 대해 3 일 전에 통보한 후, 카운티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대로 증언 및 문서와 용품 준비를 위해 증인들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지역 위원회 위원들은 본인들의 선거구에서 사용된 투표함(들) 개봉을 참관하고 카운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증언할 수 있도록 재검표 시 입회하도록 호출됩니다. 카운티 위원회가 다수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판사에게 모든 쟁점에 대한 결정 권한이 주어집니다.

수정 L. 1953, c. 19, p. 340, s. 29.